

세계 다섯번째 전문법원

특허법원이 설립되게 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뒤따랐다. 멀리는 약 15여년 전, 일부 변호사들이 주장한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업무 이관론에서부터, 가까이는 5~6년 전 몇몇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제기되었던 특허청 항고심판제도에 대한 위헌의 제기가 그 발단이

같지만, 이의 설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더욱 구체적인 의미를 덧붙인다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들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첫번째로는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서 기술과 기술과의 분쟁사건이 다루어지는데, 특히 기술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을 심리할 때에는 기술심리관이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소위 석명권(釋明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특허법원에서 과학기술자의 의견이 존중되는 풍토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두번째로는 특허법원의 설립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계속되어 오던 변호사들에 의한 특허청 항고심판제도에 대한 위헌 시비가 사실상 종결되었다는 점이다. 즉, 현재 특허청 심판소의 심결에 대한 불복은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항고를 하고, 다시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심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바로 대법원으로 상고하던 것이 98년 3월 1일부터는 특허청 심판소의 심결에 대한 불복은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하게 됨으로써, 2심인 특허법원에 있어서 사실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가능해 짐으로써 그동안 위헌론자들이 문제삼아온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문제는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로 지적재산권제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시대에 즈음하여 특허법원의 설치의 우리의 지적재산권제도의 체계 및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는 기반이 될 것이다. 즉 법률전문가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실무 및 지식과 경력을 겸비한 기술전문가가 한데 어우러져 진행되는 특허법원은 각종 지적재산권제도에 관한 법 체계정비 뿐만 아니

진통끝에 설치되는 특허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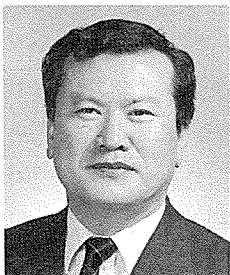
- 설립배경과 역할

WTO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獨·美·英·스웨덴에 이어 세계 다섯번째로 특허법원을 설치하게 되었다. 98년부터는 특허청 심판소의 심결에 대한 불복은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하게 되면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로 나누어져 있는 특허청의 심판기능도 「특허심판원」이라는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게 된다. 앞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법부는 물론 행정 입법부까지 앞장서서 범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WTO시대를 맞이하여 독일·미국·영국 및 스웨덴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특허법원이라는 전문법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은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적재산권에 관해 세계 각국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추어 볼 때 이는 더욱 시의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나 되새겨 본다.

특허법원 설치의 의의

특허법원 설립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고 있는 바와



金 明 信
(대한변리사회 회장)

라 우리나라 지적재산권제도 운영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 제고로 인하여 외국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는 데에도 좋은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내번제로 특허법원이 설치됨으로써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진행하던 사실심과 법률심 심리에 대한 재판부담이 해소 또는 경감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은 소수의 상고사건에 대해 집중적이고 깊이 있는 심리가 가능해짐으로써 대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에 대한 재판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된 점이다.

특허법원과 기술심리관

특허법원 설립에 앞서 대법원과 특허청 그리고 국회는 세부사항에 대한 기본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특허법원의 설치시기, 특허심판원의 설치, 기술심리관제도의 도입, 특허법원 판사의 전문성 제고,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 세기관은 이에 관하여 1994년 7월 8일자로 원칙적인 사항에 관하여 이미 합의해 놓았다.

이들 모두가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이중 특별히 관심을 가질 대목은 기술심리관제도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기술심리관제도는 그동안 대한변리사회를 비롯하여 과학기술자들이 주장해온 기술판사제도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그나마 비교적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을 만하다. 즉 기술심리관이 비록 판결문에 서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구두심리 등 재판에 참여하여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 기술적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이 갖고 있는 조사판제도보다는 훨씬 앞서가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면 특허법원의

사활은 이 기술심리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대법원에서의 재판 연구관의 역할에 못지 않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이 기술심리관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대법원은 기술심리관의 자격 또는 선발방식에 대한 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특허법원의 운영에 있어 성패의 여부는 기술심리관 제도의 운영에 달려있다고 본다면, 이를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기술심리관 발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제도 그 자체에 대한 이론과 실무지식인만큼 이에 대한 전문가 발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특허제도에 관하여 이론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자로서 기계·전자·화학 및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고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8명의 기술심리관 파견에 대비하여 이의 3배수 정도의 인원에 대해 기술심리관으로서의 양성교육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부분은 심판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리사의 특체를 포함하여 각 분야에 흠어져 있는 다양한 인재의 활용에 대해 결코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변화를 앞둔 특허심판

특허법원의 설치와 함께 크게 변화되는 부분이 바로 특허청에 있어서의 심판 조직이다. 현재 특허청의 심판기능은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로 나누어져 있으나, 98년 3월 1일부터 이 기구는 「특허심판원」이라는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게 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특허법원이 탄생되기까지는 여러 요인이나 계기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면, 특허법원 탄생의 직접적

원인은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대한 보다 이상적인 제도장치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즉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특허청 항고심판의 심결 내용이 대법원이 바라는 정도까지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이 대법원측의 견해인 점을 감안하여 지금까지의 심판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자명한 결론이 내려진 때문이다.

물론 심판의 내용을 비롯하여 하나의 사건에 대해 걸리는 기간에 있어서도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평을 받게되는 주요인인 심판인력의 절대부족현상(심판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 : 한국 - 2백18건, 일본 - 81건)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신속한 심판처리를 위한 심판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문제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지만 특허심판원에 있어서의 성공의 관건은 특허법원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조직 못지않게 운영에 있다.

특히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신분이 특수한 입장에 놓여질 수 있는 점은, 특허심판원은 소위 1심법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만큼, 심판관의 신분이나 자격은 판사에 준하는 지위를 겸하게 될 뿐 아니라, 법원의 구조와 또 다른 면은 심판관 자신이 특허법원에서 특허청장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특허법원에서 특허청장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할 사람으로서 심사관이 좋으나 심판관이 좋으나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특허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아울러 심사기능의 독립성을 고려한다면, 심판관이 자신이 내린 심결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아무튼 심판관의 능력 향상이나,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앞으로 탄생될 특허심판원의 조직구성이나 운영에 대하여는 특별히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업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대해 결코 소극적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98년 3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의 개원을 전후하여 특허청의 대전 이전 계획은 특허법원의 운영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견해이다.

즉 특허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에 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행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특허청을 포함한 청급 단위기관은 98년에 대전으로 이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별다른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특허심판원도 특허청의 소속기구로서 대전에 설치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일 것이라 보여진다. 현재 특허청은 98년에 특허법원에 제소되는 사건수를 연간 7백~1천건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만일 이와같이 된다면, 하루 평균 3~5건의 재판진행이 불가피할 것이다.

특허법원은 서울에 설치하고 특허청을 대전으로 옮긴다면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또는 특허청 관계자의 서울 출장을 비롯하여, 기록 열람 및 복사 업무 등의 문제로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 그리고 소송대리인의 대전 - 서울간의 빈번한 교통 내지 통신교류의 혼잡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는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특허행정에 큰 지장 또는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에 대해 효율적인 특허업무 수행을 위하여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며, 아울러 민간 차원에서 지역 이기주의 또는 단체 이기주의적인 면을 벗어나서 그야말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장래

를 위하여 양분된 의견을 하나로 집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경쟁력 제고 큰 기대

WTO시대를 맞이하여 특허청은 단순히 정부의 한 기구로서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특허제도 자체가 국제 조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특허청의 업무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국제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또한 그 나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으로서 세계지적재산권 기구,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문화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허위 또는 오인하기 쉬운 상품원산지 표시의 방지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산업의장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협정, 상표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원산지 명칭의 보호 및 그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협정, 산업의장의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협정, 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사의 보호에 관한 로마협약,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을 보호하기 위한 포노그램협약, 상표의 도형적 요소의 국제분류에 관한 비엔나협정, 미생물기탁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올림픽심볼의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조약, 변종식물의 보호를 위한 UPOV협약, 유럽 특허협약을 비롯하여 UR협상 결과 탄생한 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한 마라케쉬협정 및 TRIPs협정 등 이루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산업재산

권(특허·의장·상표)에 관한 협약 뿐 아니라 저작권 관련 조약에 이미 대체로 가입한 실정에 있다.

국제성을 띤 광범위한 특허업무만큼이나 우선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칩, 영업비밀,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시대에 처해있는 오늘날 하루가 멀게 무수히 쏟아져나오는 신지적재산권에 관하여 국가가 과연 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통합관리가 가능한 똑같은 유형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를 반도체칩은 통상산업부가, 또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부가, 기타 특허와 컴퓨터의 영업비밀은 특허청이, 그리고 나머지 저작권은 문화체육부가 각각 저마다 관리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국가적 낭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나 미국의 통상대표부의 기능처럼 우리도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전통적인 조직체계를 과감하게 정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 「지적재산부」를 설치하여 모든 지적재산권에 관한 통합관리를 해나갈 수도 있을 것이며, 적어도 특허청을 「산업재산처」로 승격시켜 국가경쟁력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반도체칩과 컴퓨터 프로그램과 특허업무 등 신지적재산권 업무를 관장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98년 3월 1일 특허법원의 설치를 앞두고, 우리는 지난 날 물질특허 개방압력에 직면하여 소위 pipeline product에 관한 문제를 놓고 대미관계에서 우왕좌왕하였던 부끄러운 과거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법부는 물론이고, 행정부·입법부까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에 관하여 거국적으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방책이 수립되어야 하리라 믿는다. ①7